

총동아리연합회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

2023.03.07. 전면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본 세칙은 본회 회칙 제121조의 위임을 받아 본회 중앙동아리의 활동을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의 목적(본회 회칙 제3조)과 사업(본회 회칙 제5조)을 달성함을 중시한다.
- ③ 본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큰 틀로 하되, 세부 사항은 본 세칙이나 동아리운영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심사의 대상)

- ① 심사의 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로 한다.
 1. 중앙동아리
 2. 국제캠퍼스 동아리
- ② 단과대학 동아리에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에 모든 것을 일임한다.

제3조(운영)

- ① 심사 평가에 관한 결정은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 ② 신규등록과 재등록에 관한 평가는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한다.
- ③ 승격 및 강등의 평가는 활동 보고서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가지고 심사한다.
- ④ 전항의 경우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될 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심사할 수도 있다.
- ⑤ 전 중앙동아리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기 지원금을 차등 분배할 수 있다.
- ⑥ 심사 평가 세부기준과 내용은 동아리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공정 · 특혜 시비 차단과 해당 동아리의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⑦ 심사 평가가 진행될 시에는 동아리운영위원과 참고인 이외는 그 누구도 함께 자리할 수 없다.

제2장 심사

제1절 중앙동아리 심사

제4조(포상 심사)

- ① 매년 재등록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른다.
 1. 2학기 정기 지원금 추가 지급, 세부 기준은 당해 동아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주의·경고 누적 현황 삭제

② 1항의 1호의 경우에는 한 학기 정기 지원금 총액의 3%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③ 1항의 2호의 경우에는 부과된 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차감하며 그 효력 집행은 1회에 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 1위: 경고 2회 범위 내에서 경고/주의/대표자회의 지각·조퇴 삭제(경고 2회 미만일시 잔여 효력은 자동 소멸)

2. 평가 2~5위: 경고 1회 범위 내에서 경고/주의/대표자회의 지각·조퇴 삭제(경고 2회 미만일시 잔여 효력은 자동 소멸)

3. 평가 6~15위: 주의 1회 범위 내에서 경고/주의/대표자회의 지각·조퇴 삭제(경고 2회 미만일시 잔여 효력은 자동 소멸)

4. 분과별로 최소 1개 동아리에는 포상을 보장하며, 그 조치는 주의 1회로 한다.

※ 본 호는 어느 한 분과에 1, 2, 3호에 해당되는 동아리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 1개 동아리에게 포상의 혜택을 주기 위함

5. 대표자회의의 안건 상정에 앞서 포상과 징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대내·외 기관장의 추천이 있을 시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경고 이하의 징계를,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의 이하의 징계를 삭제할 수 있다.

⑤ 4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내 기관은 학내 학생기구 혹은 학교 공식 기관·기구를 말한다.

2. 대외 기관은 사단법인 이상의 정부 등록 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추천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와 공적조서(동아리 주요이력, 수상경력, 공적내용, 증빙자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4. 추천의 내용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고 반드시 실제 확인이 가능한 공적이어야 한다.

5. 삭제되는 주의는 학기당(3월~8월/9월~내년 2월) 1회, 경고는 연간(3월~내년 2월) 1회로 제한한다.

⑥ 포상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1항의 경우 비공개, 4항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승격 심사)

① 매년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인준할 승격 대상 동아리를 선정한다.

② 승격 심사 대상은 준동아리에 경우에는 2년 뒤, 정동아리에서 강등된 준동아리에 경우에는 1년 뒤로 한다.

③ 승격의 기준은 활동이 우수하고, 동아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명확해야 하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 기준도 포함할 수 있다.

④ 승격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동아리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강등 심사)

① 매년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인준할 강등 대상 동아리를 선정한다.

② 강등의 기준은 본회 회칙 제126조 제1항에 의거하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 기준도 포함한다.

③ 강등 심사 대상 동아리의 대표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강등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동아리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승격과 강등의 특례)

- ① 승격과 강등의 대상의 동아리는 수는 중앙동아리 전체 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 ② 전 항은 급격한 동아리 사회의 변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규등록 심사)

- ① 매년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인준할 신규등록 대상 동아리를 선정한다.
- ② 본회 회칙 제115조에 의거하여 심사하되, 신규등록 대상 동아리는 본회 목적과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자동 탈락한다.
 1. 동아리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가 전 학우를 대상으로 할 것
 2. 설립 목적이 건전한 대학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
 3. 설립 목적이 기존 중앙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4. 활동 범위가 기존 중앙동아리와 유사하지 않고, 전문성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아니할 것
 5. 동아리로서 체계가 안정적이고 활동이 정기적일 것
 6. 자신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 학우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7. 회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번이 50% 미만일 것

제9조(탈퇴 심사)

- ① 일반 탈퇴에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 ② 중앙동아리(준동아리)의 경우 신규등록 후 2년 이내에 본회 회칙 제115조에 의거한 미비가 발견되거나 본 세칙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대표자회의에 탈퇴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③ 임의 탈퇴의 기준은 본회 회칙 제117조 제9항 및 제10항에 의거하되, 동아리운영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④ 임의 탈퇴 심사 대상 동아리의 대표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⑤ 탈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동아리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국제캠퍼스 동아리 심사

제10조(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국제캠퍼스 동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제11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거쳐 인준받은 동아리만이 1년간 지위를 얻는다.

② 일반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서 1부

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5. 국제캠퍼스 생활 단위 재학생 10명 이상의 회원 명단(단, 한 단과대, 하우스의 비율이 50% 이하) 1부

6. 정회원(재적생)의 재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③ 등록 절차는 본회 회칙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하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한다.

제12조(국제캠퍼스 동아리 심사)

① 동아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결산안 1부

1의1.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1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

2. 연간 예산안 1부

3. 기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